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2646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정찬수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D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20. 체결한 증여계약은 35,028,016원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28,0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이던 1/2 지분은 피고가 남편인 D에게 명의신탁 했던 것으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그 지분을 회수한 것을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반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총 매매대금 12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억 원을 인수하여 뺀 나머지 6억 원 상당인 사실,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가 친정아버지 E으로부터 6억 1,000만 원을 증여받아 그 매매대금에 사용하고, 1억 원이 넘는 증여세까지 모두 피고가 납부한 사실, 일부 부족한 매매대금은 피고가 대출받은 돈과 위 E의 손자(D와 피고의 자녀)들인 F와 G에게 증여한 돈으로 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남편 D 명의로 한 1/2 지분은 피고가 D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D가 자신의 1/2 지분을 다시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패소

판사 맹현무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 ,

아파트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105.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 16042.7㎡

2.

대 613.7㎡

3.

대 21246.2㎡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2, 3.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6042.7분의 24.69

2, 3. 21859.9분의 33.65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발생 등

가. 기초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D에게 ① 2018년 05월 16일 금 15,000,000 원을 녹취약정의 방법으로 대여 하면서 연 9.9%의 이자를 가산하여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자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연체시에는 연 12.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② 2019년 08월 06일 금 33,000,000 원을 대여하면서 연 9.9%의 이자를 가산하여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02일자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연체시에는 연 12.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 D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받은 수익자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발생된 상태에서 소외 D는 위 ① 2018년 05월 16일자 대여금은 2020년 08월 20일부터, ② 2019년 08월 06일자 대여금은 2020년 08월 03일부터 각 연체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20년 10월 08일기준 ① 2018년 05월 16일자 대여금의 중도상환금 7,776,699 원과 ② 2019년 08월 06일자 대여금의 중도상환금 27,251,317 원의 합계금 35,028,016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소외 D는 차일피일 그 기일만 연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소외 D와 피고의 사해행위 등

가. 소외 D의 유일 재산 처분

소외 D는 유일 재산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외 D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잘 알고있는 피고에게 2020년 03월 20일 증여를 원인으로 2020년 0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 50520 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위와 같은 사실에서 볼 때 소외 D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그 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지므로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 명백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소외 D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더욱더 초과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그리하여 원고는 소외 D가 피고에게 처분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들 사이에 체결한 2020년 03월 20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0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기국 접수 제 50520 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고 소외 D 명의로 소유권 회복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기국 2020년 03월 06일 접수 제 41645 호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소유권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증여 당시 부동산가격 금 1,675,000,000 원(I 시세 참조바랍니다.)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금 280,000,000 원을 공제한 금 1,395,000,000 원 중 원고의 채권액 금 35,028,016 원을 가액 배상 받고자 합니다 (금 1,350,000,000 - 금 280,000,000 원 = 1,395,000,000 원(1,395,000,000 × 1/2 = 697,500,000) 중 원고의 채권액 : 금 35,028,016 원).

나. 따라서 소외 D가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들 사이에 체결한 2020년 03월 20일 증여계약은 금 35,028,016 원 한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D에게 2020년 0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기국 접수 제 50520 호로 등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28,016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청구합니다.

